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1.28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수석급

소속 : 사업책임자실(원자로)

[상담 내용]

외부강의등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
[상담 결과]

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) 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나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재확인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0.01.28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02.05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인사노무처

[상담 내용]

월 3회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
제한횟수 초과하는 경우, 외부강의등을 진행할 수 없나요?

[상담 결과]

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) 5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, 한국전력기술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31조(외부강의등의 신고) 7항에 따라 월 3회,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게 지정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,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초과 시의 승인권자인 승인을 받을경우 참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1.02.05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03.09

[상담유형]

이메일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토목건축기술실

[상담 내용]

업체와 미팅 후 물품(휴대용 가습기, 미니수첩)을 받았습니다.
반납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.

[상담 결과]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(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)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
- 해당 내용은 동일 조항의 3항의 2(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)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,
- 업무를 위해 미팅하는 점 고려하여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거부 의사 및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1.03.09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04.23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품질안전처

[상담 내용]

외부강의등 참석요청을 받았습니다.
해당 업체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데 수령해도 될까요?

[상담 결과]

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)에 의거, 별표 2에 2. 적용기준 '라'목을 확인 할경우,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해당 업체 규정이 아닌 회사 내의 여비규정에 의거 교통비를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1.04.23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05.1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주임급

소속 : 해외사업그룹

[상담 내용]

신고 전에 외부강의등을 참가하였습니다.
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?

[상담 결과]

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2항에 의거,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

현재 참가일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금일 내로 신고하실 경우,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 점 안내드리며 빠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1.05.10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1.06.17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주임급

소속 : 기계설계그룹

[상담 내용]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?

[상담 결과]

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) 별표 2에 의
1.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'가'목에 의거 공직자의 경우 시간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
니다. 이에 동일 법령 별표 2의 2. 적용기준 '나'목에 의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
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에 1시간 이상
건에 대해서 최대 60만원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.

수령하는 사례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 주최 측에 안내 및 말씀하시기 바라며,
수령하는 사례금이 초과할 경우 반환절차 처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1.06.17

홍보팀장 홍은영